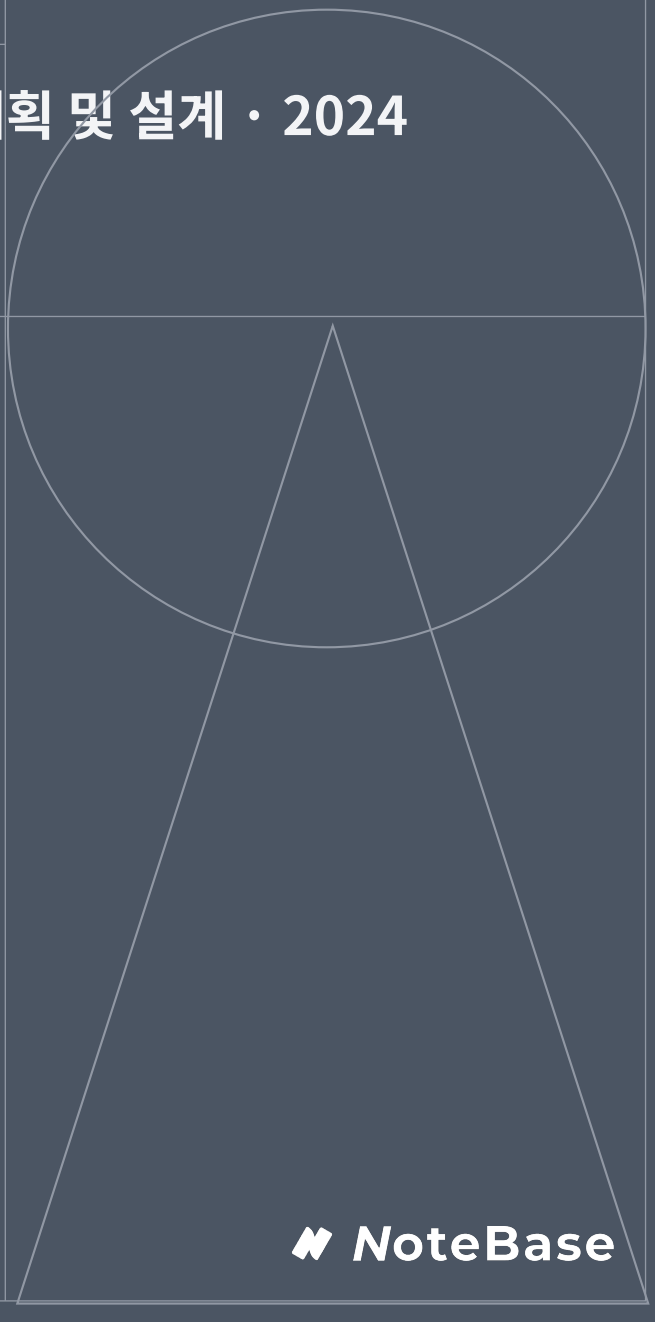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4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4

문 1. 식생 조사구 내 식물의 수관 투영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① 빈도

② 수도

③ 피도

④ 밀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관을 지면에 수직으로 투영했을 때 덮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식생 지표가 **피도**이다.

공통 해설

피도는 조사구 전체 면적 중 식물의 지상부가 수직으로 투영되어 덮는 면적의 비율이다. 수관 투영면적은 나무의 가지와 잎이 펼쳐진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지면에 투영되는 면적을 뜻한다. 따라서 조사구 안에서 수관 투영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식물이 지면을 얼마나 덮는지**를 파악하는 피도 조사에 해당한다. 개체 수가 같아도 수관이 넓게 펼쳐져 덮는 면적이 커지면 피도는 높아질 수 있다.

NoteBase

문 2. 리튼(Litton)이 분류한 경관의 4가지 기본적 유형이 아닌 것은?

① 독특한 지형을 지닌 경관(feature landscape)

② 위요된 경관(enclosed landscape)

③ 초점 경관(focal landscape)

④ 관개 경관(canopied landscape)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관개 경관은 나무의 수관이 머리 위를 덮어 천장처럼 느껴지는 경관으로, 리튼의 **4가지 기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 유형에서 빠진 것은 넓게 열린 조망을 뜻하는 전경관(panoramic landscape)이다.

개념 구분

리튼의 4가지 기본 유형은 **전경관(panoramic landscape)**, 독특한 지형을 지닌 경관(feature landscape), 위요된 경관(enclosed landscape), 초점 경관(focal landscape)이다. 전경관은 시야가 넓게 열려 있는 경관이고, 지형경관은 두드러진 지형 요소가 주변을 지배하는 경관이며, 초점 경관은 배열된 요소들이 시선을 한 지점으로 모으는 경관이다.

위요된 경관과 관개 경관은 공간을 둘러싼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②의 위요된 경관은 지형이나 수목 등이 **공간의 측면을 둘러싸는 구성**이 특징이다. 중심 공간이 주변의 산지나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의 관개 경관(canopied landscape)은 숲속에서 수관이 **머리 위의 천장면**을 형성하는 경관이다. 숲 내부에서 경험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관으로, 리튼의 분류에서 기본 유형을 보완하는 이차적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개 경관을 4가지 기본 유형에 넣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3. 조경계획 시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면중첩법(overlay method)을 제안한 조경가는?

① 레오폴드(Leopold)

② 맥하그(Mcharg)

③ 할프린(Halprin)

④ 스타이니츠(Steinitz)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맥하그는 지형·토양·식생 등 환경요소별 도면을 겹쳐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도면중첩법**을 생태적 조경계획에 적용했다. 여러 환경조건을 종합해 적지를 선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풀이

도면중첩법은 지형·토양·식생 등 서로 다른 환경정보를 같은 축척과 위치 기준의 도면으로 나타낸 뒤 겹쳐 분석하는 방법이다. 각 도면에서 특정 토지이용에 유리하거나 제약이 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같은 장소에 여러 조건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종합해 적합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개발 적지를 찾을 때 경사가 완만한 곳이라도 보전이 필요한 식생이 분포한다면, 경사만을 기준으로 적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

맥하그는 이러한 중첩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연결하는 생태적 계획 접근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일반적인 설명보다, **환경요소별 도면을 중첩하여 적지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맥하그와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방재공원

② 생활권공원: 체육공원, 주제공원: 묘지공원

③ 생활권공원: 도시농업공원, 주제공원: 수변공원

④ 생활권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정답 1번

①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에, 방재공원은 **주제공원**에 속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②

체육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이며, 묘지공원도 주제공원에 속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NoteBase

③

도시농업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이며, 수변공원도 주제공원에 속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 · 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

소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생활권공원**이다.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NoteBase

문 5. 일반적인 조경계획·설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기본계획
(나) 기본구상
(다) 기본전제
(라) 종합분석
(마) 기본설계

① (나) → (다) → (라) → (마) → (가)
② (나) → (라) → (가) → (마) → (다)
③ (다) → (라) → (나) → (가) → (마)
④ (다) → (나) → (가) → (라) → (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대상지의 여건을 **종합분석한 결과가 기본구상의 근거**가 된다. 기본구상에서 공간의 큰 방향을 정한 뒤 기본계획으로 배치와 이용 체계를 구체화하고, 기본설계에서 형태와 재료 등을 발전시킨다.

올바른 순서

(다) → (라) → (나) → (가) → (마)

(다) 기본전제: 계획의 목적과 범위,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정한다. 이는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라) 종합분석: 기본전제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연적·사회적·시각적 자료를 종합하여 대상지의 잠재력과 제약을 파악한다. 이 결과가 있어야 **대상지 여건에 맞는 공간 구상**을 세울 수 있다.

(나) 기본구상: 종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주제와 공간 구성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주요 기능과 공간 간 관계를 구상하여,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할 틀을 마련한다.

(가) 기본계획: 기본구상을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으로 구체화한다. 공간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연결할지 정리하여 **설계의 기준이 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한다.

(마) 기본설계: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과 시설의 배치를 바탕으로 형태·규모·재료 등을 구체화한다. 전체적인 계획을 실제 공간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므로 기본계획 뒤에 이루어진다.

NoteBase

문 6. 「조경설계기준(KDS 34 40 10:2019)」상 식재밀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 m로 하되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

③ 공업지역 완충녹지는 10 m^2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배식한다.

④ 가로수 교목은 생장속도와 상관없이 8 m 간격으로 배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로수 교목의 식재간격은 **생장속도에 따라 구분**한다. 생장이 빠른 교목은 8⌧10 m, 생장이 느린 교목은 6 m 간격으로 배식하므로, 생장속도와 상관없이 8 m로 고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KDS 34 40 10:2019의 4.2.1 (1) ②는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 모아심기의 표준 식재간격을 6 m로 정한다. 다만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 m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6 m는 모든 경우에 고정되는 간격이 아니다.

② O: 같은 기준의 4.2.1 (1) ①은 교목이 **성목이 되었을 때의 수관폭**을 고려하도록 한다. 수관폭은 가지와 잎이 펼쳐진 부분의 가로 너비이며, 이를 고려해 공간을 확보해야 자란 뒤 인접 수목끼리 서로 간섭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③ O: 같은 기준의 4.2.3 (1)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의 배식밀도를 10 m^2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으로 정한다. 교목과 관목의 수량을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두 종류를 합한 총수량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X: 같은 기준의 4.2.3 (3)은 가로수 중 **생장이 빠른 교목은 8⌧10 m, 생장이 느린 교목은 6 m** 간격으로 배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생장속도와 상관없이 8 m'라는 표현은 생장속도별 간격 차이를 무시한 것이며, 생장속도에 따라 간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7.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수목은?

① Magnolia grandiflora L.

② Magnolia kobus DC.

③ Magnolia sieboldii K. Koch

④ Magnolia obovata Thunb.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태산목(Magnolia grandiflora L.)은 **상록 활엽 교목**으로,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한다.

핵심 풀이

'겨울에도 푸른 잎'이라는 조건은 **상록성**을 가리킨다. 태산목(Magnolia grandiflora L.)은 넓은 잎을 가진 상록 교목으로, 겨울에도 잎이 남아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한다.

목련(Magnolia kobus DC.),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 Koch), 일본목련(Magnolia obovata Thunb.)은 모두 **낙엽성 수목**이다. 이들은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잎이 없는 상태로 지내므로 태산목과 구분된다.

NoteBase

문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정답 3번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정 대상 지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 ·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②

자연공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정 대상 지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 ·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NoteBase

③

대상 지역으로 명시된 것은 **자연공원**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지정만으로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 ·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NoteBase

④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정 대상 지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 ·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NoteBase

문 9. 「조경설계기준(KDS 34 70 20:2016)」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연중 내내 얕은 물에 의해 덮여 있는, 육지와 개방 수역 사이의 전이지대로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된 지역이다.

① 인공습지
② 저습지
③ 생태못
④ 대체습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불투수성 토양 위에 연중 얕은 물이 유지되고, 육지와 개방 수역 사이에서 물이 느리게 흐르거나 정체되는 곳을 **저습지**라고 한다.

공통 해설

저습지는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연중 내내 얕은 물에 덮여 있으며, 육지와 개방 수역 사이에 위치하고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된 지대이다. 여기서 불투수층은 물이 아래로 잘 통과하지 못하는 층을 뜻한다. 또한 **육지와 개방 수역 사이의 전이지대**라는 말은 육상 공간에서 물이 트여 있는 수역으로 이어지는 경계 공간을 의미한다. 제시된 토양 조건, 연중의 얕은 침수 상태, 입지와 유속 조건을 함께 적용하면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은 저습지이다.

NoteBase

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②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은 해당 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의 경우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정답 3번

①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말하며, 유입시설·저류지·방류시설을 포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NoteBase

②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27.>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녹지 면적은 해당 저류시설부지 면적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은 60% 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5.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7. 저류시설부지는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①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m^2 이상일 것
②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③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2분의 1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④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정답 1, 3번

①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도시공원 면적은 **100만㎡ 이상**이다. 300만㎡ 이상을 최소 면적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 ·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려면 **공원관리청이 해당 도시공원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1esElOeRiCwtjnrPYO6TWNlK7BdCvIB0.webp

NoteBase

③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 반영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부지 2분의 1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 ·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④

국가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 시에는 이행계획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지체 없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1esElOeRiCwtjnrPYO6TWNlK7BdCvIB0.webp

NoteBase

문 12. 관광개발자원 분류에서 관광자원과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광특구 - 「관광진흥법」
② 청소년수련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③ 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
④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답 2번

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②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 문화 ·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 설비와 부대 ·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 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NoteBase

③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이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2019.1.15, 2020.2.11, 2024.1.2>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④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전시·교육·연구 등을 위한 시설로,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2020.12.22, 2021.4.13, 2023.3.21, 2023.8.8, 2024.1.2, 2024.2.6, 2026.3.31>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 증식 · 보존 · 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 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 · 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시설

NoteBase

문 13.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규격은 너비 × 길이)

① 일반형: 2.3 m 이상 × 5.0 m 이상

② 확장형: 2.6 m 이상 × 5.2 m 이상

③ 경형: 2.0 m 이상 × 3.6 m 이상

④ 장애인전용: 3.3 m 이상 × 5.0 m 이상

정답 1번

①

평행주차형식 외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_-K16-12ErVKyyRDOzJ3UouzEsQzr10r.webp

②

평행주차형식 외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_-K16-12ErVKyyRDOzJ3UouzEsQzr10r.webp

NoteBase

③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_-K16-12ErVKyyRDOzJ3UouzEsQzr10r.webp

④

평행주차형식 외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_-K16-12ErVKyyRDOzJ3UouzEsQzr10r.webp

NoteBase

문 14. 한국의 전통 정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무왕 35년에 조성한 궁남지에 방장선산(方丈仙山)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

②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 사람 노자공은 일본 평안시대 궁궐에 수미산과 오교를 조성하였다.

③ 아산 외암민속마을 안을 통과하는 인공수로는 풍수에서 엽승(厭勝)의 의미가 있다.

④ 담양 소쇄원, 서울 옥호정, 구례 운조루 등은 정원의 형태를 묘사한 정원도(庭園圖)가 전해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평안시대'는 **아스카시대**로 고쳐야 한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노자공의 수미산·오교 조성은 **추고천황 20년인 612년**의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삼국사기』 무왕 35년(634년) 기록에는 궁궐 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며, 물가에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을 본떴다**고 되어 있다. 궁남지의 섬은 신선이 사는 산을 정원에 구현한 것으로, 도교의 신선사상이 반영된 사례이다.

② X: 『일본서기』에는 백제에서 건너간 노자공이 궁궐 남쪽 뜰에 수미산과 오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시기는 **추고천황 20년(612년), 아스카시대**이다. 평안시대는 그보다 뒤의 시대이므로 조성 시기를 잘못 연결하였다. 수미산은 불교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여기는 산으로, 이를 모형으로 조성한 것이다.

③ O: 외암민속마을의 인공수로는 설화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을과 집 안으로 끌어들인 물길이다. 풍수적으로는 설화산의 화기를 **물로 눌러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다. 선지의 '厭勝'은 이처럼 좋지 않은 기운을 제압한다는 뜻이며, 수로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정원의 곡수와 연못을 이루는 기능도 하였다.

④ O: 담양 소쇄원에는 '소쇄원도', 서울 옥호정에는 '옥호정도', 구례 운조루에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가 전해진다. 이 그림들은 **정원과 건물, 주변 경관의 배치**를 보여 주므로 전통 정원의 옛 모습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NoteBase

문 15.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상 생태관광자원 중 보호지역 유형과 소관부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보호지역 유형: 생태·경관보전지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② 보호지역 유형: 백두대간보호지역, 소관부처: 산림청

③ 보호지역 유형: 도립공원,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④ 보호지역 유형: 특별대책지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정답 2번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 ·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산림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NoteBase

③

도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자연공원**이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관리**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 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 · 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 · 관리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자연공원법 제4조의3(도립공원 · 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② 시 ·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④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고시와 특별종합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NoteBase

문 16.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상 기본구상에서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보전체계구상
② 확충체계구상
③ 이용체계구상
④ 정비체계구상

정답 4번

①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에는 **보전체계구상**이 포함된다. 자연생태환경·역사적 풍토 등 다양한 도시환경을 보전할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5-2-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1) 보전체계구상
(가) 자연생태환경, 역사적 풍토, 도시골격형성, 쾌적한 생활환경, 농지 등 다양한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나) 상업지, 주택지, 공장 등 각 지구의 성격에 적합한 지구내의 경관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고 녹화추진계획을 세운다.
(다) 시가화지역 내에 보전해야 하는 농지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지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보전계획을 세운다.
(라) 보전체계구상을 도면화한 「환경보전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②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에는 **확충체계구상**이 포함된다.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와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도시발전에 대응할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5-2-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2) 확충체계구상
(가)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나)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다) 주택지, 상업지, 공장지, 유원지, 공개공지 등 민간녹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라) 공원녹지 확충은 재생가능한 자연환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 확충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확충구상도」를 작성한다.

NoteBase

③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에는 **이용체계구상**이 포함된다. 도시공원을 균형 있게 배치·정비·조성하고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한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5-2-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3) 이용체계구상
(가) 균형있게 도시공원을 배치, 정비, 조성 및 특성화시키고, 상호 연계 이용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나) 도시공원, 시가지 내 수림, 수변 등 일상생활권 공원녹지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등 광역생활권의 공원녹지를 적절히 정비 및 배치한다.
(다) 권역별 지역특성에 따라 공원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라)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동향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문화학습, 자연접촉 등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이용체계를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이용체계 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이용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NoteBase

④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은 **보전체계구상·확충체계구상·이용체계구상·경관체계구상**으로 구성된다.
정비체계구상은 별도의 구성 항목이 아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5-2-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1) 보전체계구상
(가) 자연생태환경, 역사적 풍토, 도시골격형성, 쾌적한 생활환경, 농지 등 다양한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나) 상업지, 주택지, 공장 등 각 지구의 성격에 적합한 지구내의 경관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고 녹화추진계획을 세운다.
(다) 시가화지역 내에 보전해야 하는 농지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지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보전계획을 세운다.
(라) 보전체계구상을 도면화한 「환경보전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2) 확충체계구상
(가)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나)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다) 주택지, 상업지, 공장지, 유원지, 공개공지 등 민간녹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라) 공원녹지 확충은 재생가능한 자연환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 확충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확충구상도」를 작성한다.
(3) 이용체계구상
(가) 균형있게 도시공원을 배치, 정비, 조성 및 특성화시키고, 상호 연계 이용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나) 도시공원, 시가지 내 수림, 수변 등 일상생활권 공원녹지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등 광역생활권의 공원녹지를 적절히 정비 및 배치한다.
(다) 권역별 지역특성에 따라 공원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라)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동향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문화학습, 자연접촉 등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이용체계를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이용체계 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이용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4) 경관체계구상
(가) 경관형성체계는 주로 공원녹지에 따른 도시경관 향상에 대한 체계이다. 도시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녹지에 따른 경관요소의 창출 및 개선을 구상한다.
(나) 생활공간 속에서 인위적인 요소와 식물, 물 등 자연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다)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이루는 현존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가로수, 녹도 등 녹지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 창출을 구상한다.
(라) 역사 문화재와 일체된 수림지, 사찰림, 대도시 주변의 근교농지, 사면녹지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 활용하여 경관을 구성한다.

NoteBase

(마) 권역별 핵심적인 경관특성을 추출하여 특성화 방안을 구상하며,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경관계획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바) 경관체계구상을 도면화한 「경관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NoteBase

문 1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닥은 투수성 포장,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을 수 있다.

②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공공공지의 바닥은 **나무·화초·잔디를 심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선지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었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5. 바닥은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②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환경의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 · 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공지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NoteBase

④

공공공지에는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 · 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NoteBase

문 18. 『궁궐지』에 부채꼴 모양으로 기록된 창덕궁 후원의 정자는?

① 청의정

② 취규정

③ 선자정

④ 존덕정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자정(扇子亭)은 부채꼴 형태의 관람정을 『궁궐지』에서 부른 이름이다.

핵심 풀이

문항의 단서는 **부채꼴 모양과 『궁궐지』의 명칭**이다. 창덕궁 후원의 관람정은 부채꼴 지붕을 가진 정자이며, 『궁궐지』에는 선자정(扇子亭)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관람정의 형태와 기록상의 이름인 선자정을 연결해야 한다.

존덕정은 **육각형 마루와 2단 지붕**을 갖춘 정자이다. 부채꼴 형태의 관람정, 즉 선자정과는 형태가 다르다.

NoteBase

문 19. 전통 연못에 물을 넣는 수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일(自溢)

② 현폭(懸瀑)

③ 잠류(潛流)

④ 유리(琉璃)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리(琉璃)는 전통 연못의 입수 기법 명칭이 아니다. 물을 넣는 방식은 수면 높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려 넣는 자일, 위에서 떨어뜨리는 현폭, 수면 아래로 들이는 잠류로 구분한다.

개념 구분

전통 연못의 입수 기법은 물이 연못으로 들어오는 높이와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자일(自溢): 물이 **연못 수면과 같은 높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하는 방식이다. 수면에 미세한 파동이 생기지만, 큰 낙차 없이 잔잔한 경관을 이룬다.

현폭(懸瀑): 연못 수면보다 높은 곳에서 물을 **폭포처럼 떨어뜨려** 넣는 방식이다. 낙차로 생기는 물줄기의 모습과 떨어지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잠류(潛流): 물을 **연못 수면 아래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수면이 정지한 듯 고요한 경관을 이룬다.

유리(琉璃): 자일·현폭·잠류와 달리 **전통 연못에 물을 넣는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수 기법은 물의 유입 위치와 흐름을 나타내는 앞의 세 용어로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20.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상 숲길의 종류 중 다음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은/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이며, (나)은/는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길로서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을 말한다.

① (가): 등산로, (나): 둘레길

② (가): 둘레길, (나): 트레일

③ (가): 산림레포츠길, (나): 탐방로

④ (가): 트레일, (나): 휴양 · 치유숲길

정답 1번

공통 해설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길**이다. 둘레길은 지역의 역사 · 문화 체험과 경관 감상, 건강 증진을 위한 트레킹길 가운데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NoteBase